

의안번호	제9호
의결연월일	2018. 3. 13.

논산시 이·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1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교육기관의 학과성적 평가방법이 변경되고, 학교별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장학금 지급 기준 점수 구체적 명시(안 제2조 제1호, 제2호)
  -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전국 평가기준인 과목별 단위수와 석차등급 적용을 통한 평균등급 백분위 환산 값을 적용
  - 대학생의 경우 학교별로 상이한 백분율 환산 평균평점을 재학기간 평균학점 C+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(4.3중 2.3 또는 4.5 중 2.5 이상)으로 명시

-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의 평가점수 적용기준 명시
- 2) 예·체능 특기생 및 효행자 장학금 기준 조항 신설(안 제2조 제4호)
  - 기능 및 예·체능 특기생은 도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로, 효행자는 직전 연도 논산시장 표창 수상자로 신설
- 3)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에 대한 내용 정리(안 제6조)
  - 타 장학금 수혜로 본인 납부액이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본인납부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**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 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